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혁신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개채용2과 및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6. ~ 11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
7의3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별표 1 중 총계 “386”을 “3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85”를 “38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10”을 “12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386”을 “3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85”를 “38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10”을 “12”로 한다.

별표 5 1) 및 2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획조정관) ① ~ ④ (생략)	제5조(기획조정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⑤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의2.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
<u><신 설></u>	<u>7의3.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8. ~ 14. (생략)	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386</u>	<u>388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385</u>	<u>387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<u>10</u>	<u>1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의2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86</u>	<u>388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385</u>	<u>387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<u>10</u>	<u>12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